

대통령령 제 호
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
별표와 같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부과대상	금액
가.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·비치하지 아니한 자	법 제42조제1항 제1호	-	100
나.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표시를 한 자	법 제42조제1항 제2호	법 인	300
		법인이 아닌 자	15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과태료)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